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 596호 2024. 2. 15 (목)

조례

제2035호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7387
제2036호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37395
제2037호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37396
제2038호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7399
제2039호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401
제2040호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7407
제2041호	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37409
제2042호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	37411
제2043호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417
제2044호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37418
제2045호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7423

고시

제2024-52호	원지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37425
제2024-55호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무지개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7429

공고

제2023-631호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불암 100년 길 경관협정」인가 공고	37430
제2024-675호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37434
제2024-695호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도로사용개시 공고	37434
제2024-713호	김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37436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35호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김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⑥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 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집행기관 및 읍·면·동별 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계시판, 시·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 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청구인명부에 대한 보정 절차를 진행할 시, 법 제10조와 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보정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 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 등록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 등록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위 대표자

김해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청구 · []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대표
					선정대표
					선정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 · 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경상남도 김해시(총○○권 중 제○권)

김해시 ○○읍·면·동(총○○권 중 제○권)

서명 주민 수 : 명

위 주민조례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를 제출(주민e직접 플랫폼의 전자서명부 활용요청 포함)합니다.

청구인의 대표자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괄호()” 안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 청구인명부는 시·군·자치구 또는 읍·면·동별로 별도로 첨합니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작성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신고인(대표자) 김해시의회의장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김해시의회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김해시의회의장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김해시의회의장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주소(거소·체류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
	성명 주소(거소·체류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 개정이유

2023.8.1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청구 업무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의무 명시 (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련된 사항 (안 제4조)
- 청구인명부의 서명요청 등에 관련된 사항 (안 제5조)
-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 (안 제6조~제8조)
-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및 방법 (안 제9조)
-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기한 등 (안 제10조)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 (안 제11조)
- 주민조례청구 입안 지원 명시 (안 제12조)
- 시장의 사무협조 사항 (안 제13조)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36호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지이유

- 시정 현안 및 과제의 체계적 연구를 위해 1996년 ‘김해발전전략연구원(김발연)’이 설립되었으나, 2018년 이후 활용 및 연구실적 없이 형태만 유지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김해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으로, 더 이상 김발연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문 폐지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흥 태 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37호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하는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장기 시정 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김해시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2. 연구 기관의 임원 또는 연구원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김해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그 부서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p> <p>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p> <p>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안과 관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준수사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금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및 부정한 알선·청탁 금지 3. 김해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의 수행 금지 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권한 남용 금지
<p>제9조(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은 별표에 따라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10조(심의·의결 사항의 반영) ① 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안건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 한다.</p>

[별표]

보안 및 청렴서약서(제9조 관련)

본인은 20 . . . 부터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및 부정한 알선·청탁 금지
- 김해시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직무의 수행 금지
-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권한 남용 금지

20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성 명: (서명)

김 해 시 장 귀하

◇ 제정이유

현재 운영 중인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는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치중하여 전문적인 정책 자문을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능과 역할이 다른 부서와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기능을 보강한 ‘김해시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정책의 품질 및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위원의 준수 사항(안 제8조)
- 보안 및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38호

김해시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부당한 요구 및 처우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김해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및 지원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환경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리 보호 및 구제 등을 위한 교육 사업
 3. 사회적 인식개선 및 갑질 피해 예방 홍보 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5. 갑질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보육교직원의 권리 보호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적용대상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안 제6조 및 제7조)
-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안 제8조)
- 협력체계 (안 제9조)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흥 태 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39호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둘째아축하상품권”이란 둘째아가 12개월이 된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축하금 및 둘째아축하상품권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 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자로서 2023년 이후에 출생한 둘째아의 부모로 한다. 이 경우 둘째아의 부모는 둘째아가 12개월이 되는 동안 그 아이와 함께 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는 최대 50만원

2. 둘째아는 최대 50만원

3. 셋째아부터는 최대 100만원

② 둘째아축하상품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쌍생아 이상은 출생 순으로 각각 지원한다.

④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자녀의 수에 포함하여 출생 순위를 계산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축하금의 지원신청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신청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둘째자녀가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인 신고자에게 지원신청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기관의 공부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내용과 신청인의 주소
2.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의 경우, 받은 신청서를 읍면동에 보관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부에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시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을 지급해야 한다.

1. 출산축하금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할 것
2. 둘째아축하상품권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20일까지 모바일로 전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것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출산축하금이나 둘째아축하상품권의 지원대상자가 아닌데 거짓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수 대장에 환수 이유와 날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단 표의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를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하단 표의 제목란 중 “출산 축하금 지급 대상 확인”을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확인”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출산축하금 지원 대장”을 “출산축하금 환수 대장”으로 하고, 비고란 중 “일자”를 “날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3년도 출생한 둘째아의 지원에 관한 특례) 제5조의2 후단의 신설규정은 둘째아가 2023년도에 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출산축하금 환수 대장

연 번	신 청 인(보호자)				신 생 아				출산축하금 지원					비 고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출생 순위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예금주	금융 기관	계좌 번호	금 액	지급 일	

둘째아 축하상품권 환수 대장

연 번	신 청 인(보호자)				둘째아			상품권 수령처					비 고	
	성 명	생년월 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 월일	성 별	통신 사	명의자	휴대전 화	금 액	지급일		

※ 비고 : 환수 사유 및 날짜는 비고란에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자 명부

둘째아 축하상품권 신청자 명부

[별지 제4호서식]

접수번호 제 호	둘째아축하상품권 지급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	자택 : HP :		
둘째아	성명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상품권수령처	통신사		휴대전화	
	명의자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둘째아축하상품권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첨부서류	그 밖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input type="checkbox"/> 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증명 민원 대조 확인 처리 사항]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둘째아축하상품권 지급 대상 확인]				
신청인 (보호자)	성명		둘째아와의 관계(√)	
	생년월일	-	<input type="checkbox"/> 부	<input type="checkbox"/> 모
	주소			
확인 사항	<input type="radio"/> 둘째아 성명 : _____ <input type="radio"/> 둘째아 생년월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input type="radio"/>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사항 : _____년 _____월 _____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input type="radio"/> 김해시 출산축하금 수령여부 : O X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개정이유

둘째아 출산축하금 확대지원(50만원→100만원)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사항을 반영하여 둘째아 출산축하금 지원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 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둘째아축하상품권 정의 신설(안 제2조)
- 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내용 신설(안 제4조)
- 둘째아축하상품권 지원대상자 범위 신설(안 제5조의2)
둘째아가 출생하여 김해시에 거주한 지 12개월이 되었을 때 지급
※ 2023년도 출생자는 김해시 거주 조건 제외(안 부칙 제2조)
-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기준 변경(안 제6조)
 - 둘째아 출산축하금 “100만원 → 50만원”
 - 둘째아축하상품권 50만원 지원
- 둘째아축하상품권 신청 서식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흥 태 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40호

김해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김해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하 “유공자”라 한다)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6.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상이를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유공자의 자부심과 궁지를 높이고 주민이 유공자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김해시청 및 김해시 소속기관의 청사
2. 김해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50면 이상인 경우에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혹은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별표에 따라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유공자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거부하거나 유공자가 아닌 자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관리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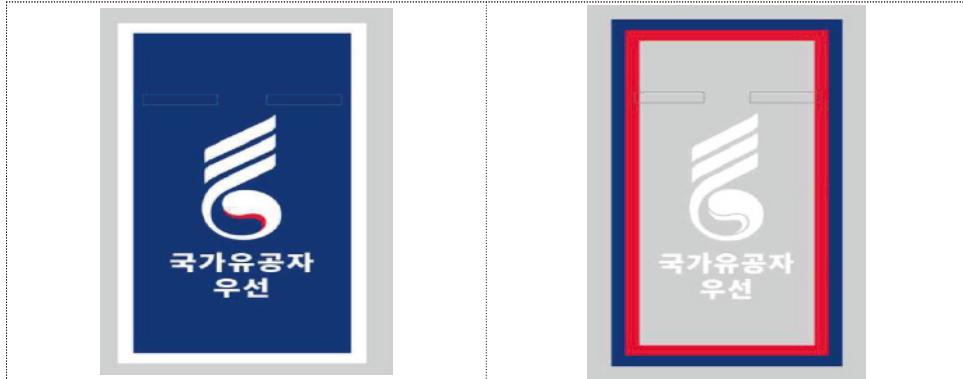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주차구획(안)

1. 바닥면 도안



2. 안내표지판 도안



◇ 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김해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 확산과 김해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적용 범위 (안 제4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안 제5조)
-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안 제6조)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안 제7조)
-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안 제8조)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41호

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중년·노인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등이 취약한 사회적 고립가구 구성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이웃만들기, 주민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지원
 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김해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한다.

◇ 개정이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김해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변경(안 제명)
- 고독사의 정의 변경에 따라 “1인 가구”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다듬음(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홍태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42호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읍·면·동·리 명칭구역획정 및 읍·면·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면장 정수

읍·면 명칭	읍·면장 정수	리명칭	구역
진영읍	1	우동리	우동리 일원
		하계리	하계리 일원
		방동리	방동리 일원
		사산리	사산리 일원
		좌곤리	좌곤리 일원
		진영리	진영리 일원
		여래리	여래리 일원
		본산리	본산리 일원
		신용리	신용리 일원
		설창리	설창리 일원
		내룡리	내룡리 일원
		죽곡리	죽곡리 일원
주촌면	1	의전리	의전리 일원
		선지리	선지리 일원
		원지리	원지리 일원
		덕암리	덕암리 일원
		천곡리	천곡리 일원
		내삼리	내삼리 일원
		양동리	양동리 일원
		망덕리	망덕리 일원
		농소리	농소리 일원
진례면	1	청천리	청천리 일원
		시례리	시례리 일원
		송정리	송정리 일원
		초전리	초전리 일원
		신안리	신안리 일원
		산본리	산본리 일원
		신월리	신월리 일원
		송현리	송현리 일원
		담안리	담안리 일원
		고모리	고모리 일원

읍·면 명칭	읍·면장 정수	리명칭	구역
한림면	1	명동리	명동리 일원
		퇴래리	퇴래리 일원
		병동리	병동리 일원
		신천리	신천리 일원
		용덕리	용덕리 일원
		안곡리	안곡리 일원
		안하리	안하리 일원
		장방리	장방리 일원
		시산리	시산리 일원
		가동리	가동리 일원
		가산리	가산리 일원
		금곡리	금곡리 일원
생림면	1	나전리	나전리 일원
		사촌리	사촌리 일원
		봉림리	봉림리 일원
		생림리	생림리 일원
		마사리	마사리 일원
		생철리	생철리 일원
		안양리	안양리 일원
		도요리	도요리 일원
상동면	1	대감리	대감리 일원
		매리	매리 일원
		감노리	감노리 일원
		여차리	여차리 일원
		우계리	우계리 일원
		묵방리	묵방리 일원
대동면	1	수안리	수안리 일원
		주중리	주중리 일원
		주동리	주동리 일원
		예안리	예안리 일원
		초정리	초정리 일원
		괴정리	괴정리 일원
		대감리	대감리 일원
		덕산리	덕산리 일원
		월촌리	월촌리 일원 [대동면 대감리 일부(6-1, 6-2, 6-4, 6-5, 6-6, 6-7, 6-8, 6-9, 6-12, 7, 8-1, 8-2, 9-1, 9-2, 9-3, 10, 11, 12, 13, 14-1, 14-2, 15, 16, 17, 18-1, 18-2, 19, 21-1, 21-2, 22, 24, 25, 25-1, 26, 26-1, 26-2, 27, 27-1, 27-2, 28, 29, 30, 31, 32-1, 32-2, 32-3, 32-4, 33-1, 33-2, 33-3,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5, 36, 36-2, 36-3, 37, 38, 40, 41-1, 41-2, 41-3, 42-1, 42-2, 42-3, 42-4, 43-1, 43-2, 44-1, 44-2, 45-1,

읍·면 명칭	읍·면장 정수	리명칭	구역
			45-2, 47, 48-1, 48-2, 49-1, 49-2, 50, 51, 52, 53, 54, 55, 56, 56-1, 57, 58, 59, 60, 61, 62, 62-1, 63, 63-1, 64, 65, 66, 66-1, 67, 67-1, 68, 69-1, 69-2, 70, 70-1, 72, 73, 73-1, 73-3, 74, 75, 75-1, 76-1, 76-2, 77-2, 77-3, 77-4,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92, 92-1, 92-2, 92-3, 93, 94, 95, 96, 97, 98, 99,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1, 110-2, 110-3, 110-4, 111, 112, 113, 114, 115, 116, 117-1, 117-2,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1, 130-2, 131, 132, 133, 134-1, 134-2, 138-2, 140, 516-2, 516-6, 912-1, 912-2, 913, 914, 915, 916, 917-2, 918-1, 918-2, 919, 920, 921-1, 921-2, 927-1, 927-2, 928, 929, 930, 931, 931-2, 932, 932-6, 933, 933-1, 933-2, 933-5, 933-7, 934, 935, 935-1, 935-2, 935-3, 937, 938, 939, 940, 941-1, 941-2, 941-3, 941-4, 942, 942-1, 942-2, 943, 944-1, 944-2, 945, 946, 947, 948-1, 949, 951, 952-1,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1013, 1014, 1015,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1, 1028-2, 1028-3, 1029-1, 1029-2, 1029-3, 1030-1, 1030-2, 1030-3, 1031, 1032, 1034, 1035, 1035-1, 1036, 1036-1, 1037, 1038, 1038-1, 1039-1, 1039-2, 1040, 1040-1, 1041, 1042, 1042-1, 1042-2, 1042-3, 1042-4, 1042-5, 1042-6, 1042-7, 1043-1, 1043-2, 1043-3, 1043-4, 1044, 1044-1, 1045, 1046-1, 1046-2, 1047-1, 1047-2, 1047-4, 1048-1, 1048-2, 1048-3,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1056, 1056-1, 1057, 1058, 1059, 1060, 1061, 1062, 1063, 1064-1, 1064-2, 1064-3, 1064-4, 1065-1, 1065-2, 1065-3, 1065-4, 1066, 1067, 1068, 1069, 1070, 1071, 1072, 1073, 1074-1, 1074-2, 1074-3, 1074-4, 1074-5, 1074-6, 1074-7, 1074-8, 1074-9, 1074-10, 1074-11, 1074-12, 1074-13, 1074-14, 1074-15, 1074-18, 1074-19, 1075-1, 1075-2, 1075-3, 1075-4, 1075-5, 1075-6, 1075-7, 1075-8, 1075-9, 1075-10, 1075-11, 1075-12, 1075-13, 1075-14, 1075-15, 1075-16, 1075-17, 1075-19, 1075-21, 1076-1, 1076-2, 1076-3, 1076-4, 1076-5, 1076-6, 1076-7, 1076-8,

읍·면 명칭	읍·면장 정수	리명칭	구역
			<p>1076-9, 1076-10, 1076-11, 1076-12, 1076-14, 1076-15, 1076-18, 1076-19, 1076-20, 1076-21, 1076-31, 1076-32, 1076-33, 1182-3, 1182-4, 1182-5, 1182-6, 1182-7, 1182-11, 1182-19, 1182-25, 1182-26, 1182-27, 1182-28, 1182-29, 1182-30, 1182-31, 1182-32, 1182-33, 1182-34, 1182-35, 1183-1, 1183-41, 1183-42, 1183-43, 1183-44, 1183-45, 1183-46, 1183-47, 1184-80, 1196-5, 1196-7, 1198-2, 1251, 1251-1, 1252, 1253, 1254, 1255, 산57, 산58, 산59, 산60, 산61, 산62, 산63, 산64, 산65, 산66, 산67-1, 산68, 산69, 산70, 산71, 산72, 산73, 산74, 산75, 산76, 산77, 산78, 산79, 산80, 산81, 산82, 산83, 산84) 대동면 덕산리 일부(411-1, 411-3, 412-3, 414-3, 415, 415-1, 416-1, 417-1, 417-2, 417-3, 417-4, 417-5, 417-6, 417-17, 417-18, 417-19, 417-20, 417-21, 417-22, 417-23, 417-24, 417-25, 417-26, 418-1, 418-2, 418-3, 418-4, 418-5, 418-6, 418-7, 418-8, 418-9, 418-10, 418-11, 418-12, 418-13, 418-14, 418-19, 418-21, 418-22, 418-23, 419-2, 419-3, 419-4, 419-5, 419-6, 419-7, 419-8, 419-9, 419-10, 419-11, 419-12, 419-13, 419-14, 419-15, 419-16, 419-17, 419-18, 419-19, 419-20, 419-21, 419-22, 419-23, 419-24, 420-1, 420-4, 420-5, 420-6, 420-7, 420-8, 420-9, 420-10, 420-11, 420-12, 420-13, 420-14, 420-15, 420-16, 420-17, 420-18, 420-19, 420-24, 420-25, 420-27, 420-28, 420-29, 420-30, 420-31, 420-32, 421-1, 421-3, 421-6, 421-7, 421-8, 421-9, 421-10, 421-11, 421-12, 421-13, 421-14, 421-15, 421-16, 421-17, 421-18, 421-19, 421-20, 421-21, 421-22, 421-23, 421-27, 421-30, 421-31, 421-32, 421-33, 421-34, 421-35, 421-36, 421-37, 421-38, 421-39, 421-41, 421-42, 421-43, 421-44, 421-45, 422-1, 422-2, 422-4, 422-5, 422-6, 422-7, 422-8, 422-9, 422-10, 422-11, 422-12, 422-13, 422-14, 422-15, 422-16, 422-17, 422-18, 422-24, 422-25, 422-26, 422-27, 422-28, 422-29, 422-32, 422-33, 422-34, 422-35, 422-36, 422-37, 422-39, 422-41, 422-42, 423-1, 423-3, 423-4, 423-5, 423-6, 423-7, 423-8, 423-9, 423-10, 423-11, 423-12, 423-13, 423-14, 423-15, 423-16, 423-17, 423-18, 423-19, 423-20, 423-21, 423-22, 423-23, 423-24, 423-25, 423-26, 423-28, 424, 425, 426, 437-5, 438-1, 439-1, 439-2, 440, 442, 443-1, 443-2, 444-1, 444-2, 445-1, 445-2,, 446, 447, 448, 449, 450-1, 450-2, 451, 452,</p>

읍·면 명칭	읍·면장 정수	리명칭	구역
			<p>455, 456, 1111, 1111-3, 1111-5, 1111-6, 1111-7, 1111-8, 1111-9, 1111-10, 1111-11, 1111-12, 1111-13, 1111-14, 1111-15, 1111-16, 1111-17, 1111-18, 1111-19, 1116-15, 1116-16, 1116-18, 1116-27, 1116-28, 1116-34, 1116-35, 1116-36, 1116-37, 1116-38)</p> <p>대동면 조눌리 일부(128-1, 128-3, 134, 136-1, 136-2, 136-3, 136-4, 136-5, 136-6, 136-7, 136-8, 136-9, 136-10, 136-11, 136-12, 136-13, 136-14, 136-15, 136-16, 136-17, 136-18, 136-19, 136-20, 136-21, 136-38, 136-39, 136-42, 136-43, 136-45, 136-47,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6-10, 176-11, 176-12, 176-13, 176-14, 176-15, 176-17, 176-18, 176-19, 176-20, 176-24,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 183-7, 183-8, 183-9, 183-10, 183-11, 183-12, 183-13, 183-14, 183-15, 183-16, 183-17, 183-18, 183-19, 183-20, 183-21, 183-22, 183-23, 183-25, 184-1, 184-2, 184-3, 184-4, 184-5, 184-6, 184-7, 184-8, 184-9, 184-10, 184-11, 184-12, 184-13, 184-14, 184-15, 184-16, 184-17, 184-18, 184-19, 184-20, 184-21, 184-22, 184-23, 184-24, 184-25, 185-1, 185-2, 185-3, 185-4, 185-5, 185-6, 185-7, 185-8, 185-9, 185-10, 185-11, 185-12, 185-13, 185-14, 185-17, 185-18, 185-19, 185-21, 185-22,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6-10, 186-11, 186-12, 186-13, 186-14, 186-15, 186-16, 186-17, 186-18, 186-19, 188-1, 188-2, 188-4, 188-5, 188-6, 188-7, 188-8, 188-9, 188-10, 188-11, 188-12, 188-13, 188-14, 188-22, 188-23, 188-24, 188-25,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89-10, 189-11, 189-12, 189-13, 189-14, 189-15, 189-16, 189-17, 191-1,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1-10, 191-11, 192-1, 192-2, 192-3, 192-4, 192-6, 192-7, 192-8, 192-9, 192-10, 192-11, 192-12, 192-13, 192-14, 192-15, 231-1, 231-9, 231-28, 231-29, 231-30, 231-31, 231-32, 231-33, 231-34, 231-35, 231-53, 232, 233, 234, 235, 236-5, 236-14, 236-30, 236-31, 236-32, 237, 244, 245, 246, 247, 249, 288-2, 289, 290, 291, 292, 293, 294, 295, 307-1, 311-1, 312, 313, 314, 316, 317, 318) [총 993필지를 대동면 월촌리로 편입] </p>
		조눌리	조눌리 일원

[별표 2]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행정동 명칭	동장 정수	구 역
동상동	1	동상동 일원
회현동	1	서상동, 봉황동 일원
부원동	1	부원동 일원
내외동	1	내동, 외동 일원
북부동	1	대성동, 삼계동, 구산동 일원
칠산서부동	1	홍동, 풍유동, 명법동, 이동, 화목동, 전하동, 강동 일원
활천동	1	어방동, 삼정동 일원
삼안동	1	안동, 삼방동 일원 [삼방동 일부(101-2, 101-3, 102-4, 102, 103-28, 103-29, 103-24, 103-25, 103-26, 1385-26, 1385-35, 1385-27, 1385-10 총 13필지)를 안동으로 편입] [안동 일부(360-10 총 1필지)를 삼방동으로 편입]
불암동	1	지내동, 불암동 일원
장유1동	1	유하동, 내덕동, 부곡동, 무계동, 신문동 일원
장유2동	1	삼문동, 대청동 일원
장유3동	1	장유동, 응달동, 수가동, 관동동, 율하동 일원

◇ 개정이유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지구 일원화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대동면 대감리와 덕산리, 조눌리, 월촌리 경계에 조성되고 있어 대감리, 덕산리, 조눌리 일부를 대동면 월촌리로 변경
 - 조정내역 : 대동면 대감리 520필지($521,767m^2$) \Rightarrow 월촌리로 편입
대동면 덕산리 235필지($294,212m^2$) \Rightarrow 월촌리로 편입
대동면 조눌리 238필지($421,807m^2$) \Rightarrow 월촌리로 편입
-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삼방동과 안동 경계에 조성되고 있어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변경
 - 조정내역 : 삼방동 13필지($3,534m^2$) \Rightarrow 안동으로 편입
안동 1필지($308m^2$) \Rightarrow 삼방동으로 편입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43호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을 "(규격봉투의 공급 등)"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규격봉투 제작 등의 대행) ① 시장은 제15조의 규격봉투 제작과 제17조의 규격봉투 공급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격봉투의 제작·공급·판매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14조제2항 관련)

구분	용량	용도	형태	비고
일반규격 봉투	5ℓ	소각용	재사용 (손잡이 있는 것)	
	10ℓ			
	20ℓ			
	50ℓ		손잡이 없는 것	
	75ℓ			
	10ℓ	매립용	마대	· 20ℓ 신설 · 5ℓ, 30ℓ는 재고 소진 시 까지만 공급
	20ℓ			
공공용 봉투	30ℓ	공공용	공공용봉투	
	50ℓ			
	75ℓ			

◇ 개정이유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공급·판매 업무의 대행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사항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봉투의 제작 규격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규격봉투의 제작·유통·판매 대행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 일반규격봉투의 용량 기준 변경(안 별표)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 해 시 장 홍 태 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44호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김해가야테마파크는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김해가야테마파크”란 김해시 가야테마길 161 일원의 체험시설, 숙박시설, 놀이시설, 공연 시설, 전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 “부대시설”이란 판매시설, 식음시설, 휴게실, 전기·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소방시설, 화장실, 그 밖에 테마파크 내 프로그램 운영시설물 및 장비·소품 일체와 관람객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 “관리·운영”이란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및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마케팅 홍보 및 이벤트사업 등을 말한다.
-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관리 및 운영

제4조(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 ①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매주 월요일.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다만, 특별행사기간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개장할 수 있다)
- 그 밖에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김해가야테마파크 이용시간은 09:30 ~ 18:00를 기본으로 하며, 관리자는 절기 변화 등에 따라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입장 전의 매표시간은 이용개시 시간부터 이용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이 경우 판매된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요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김해가야테마파크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김해가야테마파크 내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물 위탁 사용료의 요율은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체험시설·공연시설·숙박시설·놀이시설 등의 이용요금은 현장 여건에 맞게 관리자가 금액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 후 결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요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④ 특별행사, 이벤트 등 관리자가 주최하는 행사 개최 또는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다.

제6조(입장권) ① 입장권에는 시설물의 명칭, 정수금액,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입장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며, 전산 발매시스템에서 발매한다.

제7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방문객
2. 외국사절단과 국빈 및 그 수행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4세 이하의 아동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상 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의료 급여증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0.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 배우자
12.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미취학 아동 단체는 10분의 2 이하, 그 외 단체는 10분의 1 이하의 인솔자를 말한다)
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입장료 등의 징수 특례)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 또는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 등으로 인하여 관리자가 관람객의 자유로운 관람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자는 방송사 및 제작사와 협의하여 시설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매표소 설치 등) ① 매표소는 김해가야테마파크시설 입구 또는 시설 내의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요금표
2. 매표시간
3. 관람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의 금지사항

제10조(수입금의 처리) 시가 직영하여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체험비 등은 다음 날 18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종사원 및 안내원) ①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람과 부대시설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종사원 및 안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② 종사원은 지정된 매표소에서 입장권의 판매 및 검표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며 시설유지 관리와 주변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방문객을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2.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을 일삼는 사람
3.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한 사람
4.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5. 시설물 내에 위험물을 반입한 사람
6.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제13조(손해배상) ①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의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과 시설물 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김해가야테마파크내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입장료 환불)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료를 환불해야 한다.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3장 위탁운영

제1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하고, 시설의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김해가야테마파크 시설물과 부속시설물은 시장이 관리하며, 시장이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관리·운영한다.

③ 관리자는 김해가야테마파크의 시설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요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김해시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관광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수탁적격자 심사 및 위·수탁 협약체결 완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김해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제척, 기피, 해촉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 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심의에서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체결)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또는 수탁기관 단체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대상 기간, 재산, 사무, 권한 등 그 내용
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및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
5.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의무이행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시행하며 필요시 시장이 비용을 보조하여 관리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수탁재산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시행한다.

제20조(위탁 관리 운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5. 사용료를 지정된 시기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1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자료를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보험가입)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김해가야 테마파크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김해가야테마파크 입장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원)		비 고
	개 인	*김해시민/ 자원봉사자/ 단체	
어린이	5세 ~ 12세	3,000	2,000
청소년/ 군인	청소년: 13세 ~ 18세 군인: 부사관 미만의 군인 또는 대체복무요원	4,000	3,000 (군인은 제복으로 증명 가능)
어른	19세 ~ 64세	5,000	4,000
경로	65세 이상	3,000	2,000 신분증 제시
감면 대상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무료	관련 증명서류 제시

* 김해시민/자원봉사자/단체

- 김해시민: 김해시민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
(「김해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희망자, 장기등기증자, 인체조직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 「김해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매도시등의 주민, 「김해시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향인증을 발급 받은 출향인은 김해시민 입장료를 적용한다)
- 자원봉사자: 봉사실적 200시간 이상인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
- 단체 : 20명 이상

◇ 개정이유

- “2024 김해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적 관광마케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행사나 이벤트 시 입장료 할인 및 단체 인솔자 면제 조항 등을 신설함.
- 김해가야테마파크의 휴장일, 운영시간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기타 자구수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장일(공휴일이 월요일인 경우 제외)로 지정(안 제4조제1항)
- 김해가야테마파크의 기본 운영시간을 변경하고 절기변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개정 (안 제4조제2항)
- 특별행사, 이벤트 등 관리자가 주최하는 행사 개최 또는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할인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
- 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인솔자의 입장료 면제조항 신설(안 제7조제11호)
- 기타 자구의 수정

제258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김해시장 흥태용

2024년 2월 15일

김해시 조례 제2045호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해시 화정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일요일과 월요일”을 “일요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사용신청서”를 “사용(변경)신청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시설 사용료

층별	시설명	수용규모	사용료(원)		용도	이용가능 장치
			회당	전일		
1층	어울림 전시홀	(76.38㎡)	무료		작품 전시	조명장치, 와이어
2층	다목적실 (방음시설)	100명(519.3㎡)	10,000	30,000	강연, 교육, 회의, 발표회, 공연 등	빔, 스크린, 음향시설, 조명장치
3층	동아리실 1	8명(17.12㎡)	5,000	15,000	취미와 공부를 위한 소규모 모임	
	동아리실 2	10명(25.23㎡)	5,000	15,000	취미와 공부를 위한 소규모 모임	
	세미나실	30명(75.65㎡)	7,000	21,000	강연, 교육, 회의	빔, 스크린, 음향시설
	마루실 (방음시설)	10명(104.76㎡)	5,000	15,000	댄스 연습 등 신체활동, 소규모 음악활동	거울, 마루, 음향시설

비고

- 제2조제1호의 마주침 공간 내 어울림 전시홀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준비기간부터 전시와 철거까지 최대 한 달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
- 대관시간은 회당 3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정생활문화센터에서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다.
- 사용료에는 냉·난방기 등의 부대시설 장비 이용료가 포함되며, 해당기기 조작이 가능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화정생활문화센터 어울림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김해시 공공예약 포털 ID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사용시설	<input type="checkbox"/> 전시홀 <input type="checkbox"/> 다목적실 <input type="checkbox"/> 동아리실1 <input type="checkbox"/> 동아리실2 <input type="checkbox"/> 세미나실 <input type="checkbox"/> 마루실		
	사용 목적 (용도)		사용인원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단체명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김해시장 귀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input type="radio"/>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확인				
<input type="radio"/>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input type="radio"/>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 연도				
※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보호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개정이유

화정생활문화센터의 개관일과 대관시설을 확대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휴관일을 매주 일요일로 정하여 개관일 확대 (안 제5조제2항제1호)
- 대관시설 확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정비 (안 별표 1)
- 시설 사용 신청서와 시설 사용 변경신청서 겸용서식 사용 및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원지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김해시 고시 제2023-172호(2023. 6. 1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된 원지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김 해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변경없음)

- 원지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가교역할을 하는 산업물류 유통의 중심도시인 김해시에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확충 및 지속적인 제조업의 영위를 위해 공장용지 부족을 해소하고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기술력 향상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167-9번지 일원
- 면 적 : 산업단지면적 218,794m², 지구외사업(진입도로 및 가감속차로) 7,092m²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7년 12월 28일 ~ 2024년 6월 30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변경사유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등으로 토지 보상을 위한 모임이 금지되어 토지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토지보상계약이 원활히 진행중에 있어 사업 기간을 1년 연장코자 함.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식료품 제조업(C1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C13), 편의점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35),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부동산업(L68)

※부동산업은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업종에만 적용.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내 모든 산업시설구역등에 부동산업이 적용되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기정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원지일반산업단지 대표 김병수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2, 상가동 205호

-변경

- 대표사업시행자 : 리우개발 주식회사 대표 구자봉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3층(장전동, 효원굿플러스 3,4,5층)
- 공동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원지일반산업단지 대표 박종기
-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74(석동)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재원조달계획

- 본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약 62,526백만원 중 금융대출자금 50,000백만원, 자체조달 12,526 백만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나. 연차별투자계획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4년 6월30일
합 계	62,526	600	600	600	600	800	1,200	58,126
보상비	16,000	-	-	-	-	-	-	16,000
공사비	40,397	-	-	-	-	-	-	40,397
각종부담금	129	-	-	-	-	-	-	129
기타비용	6,000	600	600	600	600	800	1,200	1,600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 생략

11. 에너지사용계획 : 해당없음(변경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없음)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변경없음)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15.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변경없음)

가. 용도지역(변경없음)

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다.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라.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사.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6.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17. 지정(개발계획)구역별 좌표조서(변경없음)

18. 산업단지 외 개발사업(진입도로)(변경)

가. 산업단지 외 개발사업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167-9번지 일원

○ 규모 : 진입도로 및 가감속차로 설치 A=7,092m²

- 중로 2-60호선(B=15m, L=232m)

- 완화차로설치(B=9~15m, L=170m)

나. 산업단지 외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 개발기간 : 2017년 12월 28일 ~ 2024년 6월 30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실수요자개발)

다. 산업단지 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기정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원지일반산업단지 대표 김병수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2, 상가동 205호

-변경

○ 대표사업시행자 : 리우개발 주식회사 대표 구자봉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3층(장전동, 효원굿플러스 3,4,5층)

○ 공동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원지일반산업단지 대표 박종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74(석동)

라.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마. 기반시설계획(도로)(변경없음)

바.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1) 총사업비 추정

구 분		금액(백만원)		비고	
총사업비		1,783			
용지비	토지매입비	200		공시지가 적용	
조성비 (기타비용포함)	진입도로	1,583		산업단지 외 사업	

2) 연차별 투자계획

○ 총 사업비 약 1,783백만원은 용지보상비 및 조성비 등이 소요되며, 이후 공사진행에 따라 연차별로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임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4년6월30일
합계	1,783	-	-	-	20	20	20	1,723
용지비	200	-	-	-	20	20	20	140
조성비(기타비용포함)	1,583	-	-	-	-	-	-	1,583

사.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변경없음)

아.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차. 지정(개발계획)구역계 좌표조서(변경없음)

19. 관련도서의 열람방법(변경없음)

○ 관련도서는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두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련도서 게재생략). 끝.

불임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변경**)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산167-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수도공급설비, 유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원지일반산업단지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기정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원지일반산업단지 대표 김병수
-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462, 상가동 205호

-변경

- 대표사업시행자 : 리우개발 주식회사 대표 구자봉
-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3층(장전동, 효원굿풀러스 3,4,5층)
- 공동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원지일반산업단지 대표 박종기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 74(석동)

5. 사업기간(변경없음)

- 2017년 12월 28일 ~ 2024년 6월 30일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변경없음)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무지개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무지개공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같은 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김 해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142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김해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무지개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무지개공원 내 보도교 설치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도시계획시설	금회시행	비고
근린공원	41,315.5	813.7	김해시 고시 제2015-245호 (2015.12.24.)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주)디엔아이 대표자 이충형

○ 주소 : 김해시 김해대로 2492번길 5, 3층(삼정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4개월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종류 및 내용	
1	주촌면 선지리	1420	공	25,328.6	813.7	김해시	-				

7. 실시계획인가 신청사유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사항인 보도교를 개설하여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8. 관계도면 : 실음생략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6)비치】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불암 100년 길 경관협정」 인가 공고

불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불암 100년 길 경관협정」에 대하여
경관법 제21조(경관협정의 인가)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경관협정의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김 해 시 장

1. 경관협정 명칭

불암 100년 길 경관협정

2. 경관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 가. 2007년 「경관법」 제정으로 주민 스스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관협정제도” 가 마련됨
- 나. 그동안 관 주도의 경관개선으로 지역 공동체 파괴, 획일적이고 특성없는 경관 형성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주민 인식과 현실을 벗어난 이론적, 형식적 경관협정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음
- 다. 이에 따라 마을 경관은 실현 가능하고 현장에 맞는 주민생활형 경관협정을 통해 관리 유지되는 것이 중요함
- 라. 이러한 문제와 요청에 기반을 두고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실천가능한 요소와 활동에 대해

- 주민 주도로 협정을 맺고 실천하는 마을 단위(점, 선, 면)의 경관협정사업 추진 필요
- 마. 경관협정사업을 통한 주민 주도적 경관개선 활동으로 마을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
- 바. 경관협정 교육프로그램(S/W) 운영을 통한 경관협정서 작성 및 경관협정 체결을 통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시스템 및 협업체계 구축
- 사. 시설물(H/W) 기본구상과 이를 연계한 시설관리 및 지역 인지도 향상, 경관 가치증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
- 아. 경관협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종료 이후 주민 중심의 마을 경관 유지관리, 운영기반 마련

4. 경관협정의 내용

항목	내용	참여자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개보수 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형태 및 외관이 되도록 한다. 채도와 명도의 대비가 강조되는 무분별한 원색 사용을 금지한다. 김해의 ‘진입판문’으로서의 금옥문의 대표색상인 금색과 옥색을 주요 색상으로 활용하여 아름답게 마을을 가꾼다. 현재 협정대상지인 12통에서 13통 및 주변지역으로 협정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일관성 있는 만을 분위기를 형성한다. 	소유자 임차인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협정구역 내 옥외광고물 등은 일정한 규모(10cm) 이내로 한다. 협정 기간 동안 합의 없이 옥외광고물의 자의적 변경 및 증설을 지양한다. 업종 변경 시에는 경관협정운영회와 협의 후 옥외광고물을 설치한다. 건물 전면의 청소 및 노상 적치물을 정리하고 ‘불암 100년길’의 로고가 포함되도록 디자인하여 상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소유자 임차인
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협정을 통해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경관협정운영회 측에서 관리하며(매월 1회 대청소, 폐가물 적치 시 운영회 신고)하며, 협정 만료 후 2년 간 자율적 관리기간을 이행한다. 공공시설물은 사유화 할 수 없다. 	소유자 임차인
상징조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지 내에 100년 길 로고가 들어간 태양열 충전식 조명을 부착하여 불암 마을 안길 치안을 확보하고 불암 100년 길의 상징성을 나타낸다. 깨진 유리병들이 붙어있는 담장에 불암 100년 길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장식을 설치한다. 	소유자 임차인
쓰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 반출시간(오후 8시 이후 반출) 및 장소를 준수한다. 음식쓰레기는 최대한 물기가 생기지 않게 하여 배출한다. 거리 청결을 위해 협정체결자 건축물 앞 거리를 스스로가 청결을 유지한다. 	소유자 임차인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골목길 등에는 각 상가에서 발생하는 적치물(화분 등)을 두어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소유자 임차인
공공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용지는 함께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소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치된 공간이 발견될 경우에는, 경관협정운영회를 중심으로 즉각 활용방안을 모색 한다. 	임차인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 등 공공공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주민이 합동 청소를 한다.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 등은 경관협정운영회에서 정한다) 정기적인 주민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관협정운영회에서 정한다) 주민 간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소유자 임차인

5. 경관협정 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명칭 불암 100년길 경관협정운영회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불암동 220-17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2024년 2월 ~ 2026년 2월

7. 경관협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의 내용의 정함은 경관협정운영회의 정기회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 결정 한다.
- 정기회의는 월 1회 실시하며 경관협정 내용의 실천 및 유지 · 관리에 대해 논한다.
- 경관협정으로 정해진 내용은 소유자와 임차인인 주민 모두가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8.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 사항

- 경관협정운영회는 경관협정의 유지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으며 체결자가 협정을 위반할 시 운영 회는 상황을 파악하고 시정 권고를 한다.
- 체결자가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시의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을 했을 경우 운영회는 상황을 파악하고 김해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단, 현상변경의 경관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운영규약의 제27조의 규정에 준한다.
 - 경미한 변경(사업면적의 10% 이내)일 경우 해당 체결자에게 시정 권고를 한다.
 - 중대한 변경(사업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김해시청 주관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제재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 운영회는 협정위반이나 그에 관한 제재내용, 의결사항을 기록하고 회원과 김해시청에 통보한다.

9.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 체결자는 협정의 유효기간 내에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권리의 이전 등으로 자격 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체결자는 권리를 이전하기 전에 권리를 양도받는 사람에게 협정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제재 사항 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3. 체결자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자는 경관협정을 승계할 수 있다.

10.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 체결자는 협정 유효기간 내에 이미 완료된 지원사업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는 경관협정운영회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는 임의변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김해시청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① 재해나 하자 등에 의한 개보수나 수선이 필요할 경우
- ② 새로운 건축행위를 하면서 최초의 사업에 준하거나 그보다 경관을 향상시킨 경우
- ③ 공공의 연관된 타 사업에 의해 변경될 경우
- ④ 기타 주변 환경의 변화로 주변과의 조화를 위해 변경할 경우

2. 경관협정운영회는 사전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경미한 변경인 경우(사업면적의 10% 이내)는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행토록 한다.
- ② 중대한 변경인 경우(사업면적의 10% 이상)는 김해시청에 통보하여 주관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변경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3. 경관협정운영회는 체결자가 지원사업 내용을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제재 사항을 따라 조치한다.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 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7-505호(2007. 12. 13.)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9-257호(2009. 5. 2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었으며, 김해시 고시 제2024-25호(2024. 1. 25.)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어 「도시개발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김 해 시 장

- 사업의 명칭 :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 시 행 자 :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삼정동, 부원동 192번지 일원
-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 사업시행지의 면적 : 212,960.3㎡
 - 용도별면적

구 분	면 적(㎡)	구성비(%)
합 계	212,960.3	100.0
주거용지	111,804.2	52.5
도시 기반 시설 용지	101,156.1	47.5
	20,919.1	9.8
	57,899.4	27.2
	6,479.4	3.0
	11,116.4	5.3
	2,582.4	1.2
	2,159.4	1.0

5. 준공일자 : 2024년 2월 8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관리처분
도로	일반 도로 폭 6~20m(소로,중로)	노선 (면적:m ²)	19 (57,106.1)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특수도로 폭 4.3~6m(보행자전용도로)	노선 (면적:m ²)	4 (793.3)	
	계	노선 (면적:m ²)	23 (57,899.4)	
공 원	소공원	개소 (면적:m ²)	4 (6,479.4)	
녹 지	연결녹지, 완충녹지	개소 (면적:m ²)	5 (11,116.4)	
유 수 지	저류시설	개소 (면적:m ²)	1 (2,159.4)	
상 수 도	상수관 D50~500mm 소화전	m EA	9,415 8	
하 수 도	오수관 D150~300mm	m	4,628	본 시설물을 관리할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우수관 D250~1,100mm	m	5,756	
	우수BOX 2.0×1.5×1련 외 맨홀	m EA	827 163	
	우수받이 0.3×0.4	개소	451	
	초기우수처리시설	개소	5	
전기시설	가로등	EA	98	
	신호등	EA	29	

7. 관계도서는 사업시행자인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및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도로사용개시 공고

‘김해 삼어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공사 완료됨에 따라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김 해 시 장

□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사항

1. 사용 개시 도로 현황

도로 종류	노선명	사용개시구간		개시연장	주요 통과지	사용 개시일
		시점	종점			
도시계획 도로	종로-1-1	광2-3	종2-3	L=48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종로-1-2	광2-3	종2-2	L=184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종로-2-1	소1-1	종2-3	L=412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종로-2-2	종2-3	소1-7	L=944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종로-2-3	종1-2	종2-1	L=65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종로-3-1	종2-1	종2-3	L=292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종로-3-2	종2-2	종3-3	L=582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종로-3-3	광2-3	종2-2	L=236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1-2	종2-2	종3-2	L=288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1-3	종3-2	종3-3	L=186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1-4	종3-2	소1-7	L=299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1-5	중3-2	소1-3	L=84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1-6	소1-7	중2-2	L=149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1-7	중3-3	중2-2	L=274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1-8	중3-1	소3-5	L=25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2-1	중3-2	중2-2	L=71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2-2	중3-2	중3-2	L=158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3-1	광2-3	소1-2	L=38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3-2	광2-3	소1-2	L=36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3-3	소1-2	중3-2	L=37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3-4	광2-3	소1-4	L=35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3-5	중3-4	소1-1	L=113m	-	'24. 2. 15.
도시계획 도로	소로-3-6	중3-2	삼정동363-2대	L=68m	-	'24. 2. 15.

2. 도면의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24. 2. 15. ~ 2024. 3. 7.
-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055-330-3616)

김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김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따라 김해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02. 15.

김 해 시 장

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2,198,000원/ m^3
- 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 ▶ 화목 · 장유 · 진영하수처리구역 : 2,198,000원/ m^3
 - ▶ 그 외 하수처리구역 : 3,140,000원/ m^3

2. 대상지역

- 김해시 하수처리구역 내

3. 부과기준

-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김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4.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또는 타행위 시행자

5. 시행일 : 공고일로부터 시행

6. 문의처

- 개별건축물등 : 김해시 하수과 하수행정팀(☎ 055-330-3988)
- 타 행위 : 김해시 하수과 공공하수팀(☎ 055-330-3966)